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13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김현정 · 채현일 · 조계원
김남근 · 차지호 · 민병덕
황명선 · 강준현 · 김문수
박정현 · 이강일 · 박홍배
김용만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동의 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하여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열람뿐만이 아닌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며,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처리사항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다.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함(안 제35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 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또는 이동 등을 분석·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말한다.

제4조제6호 중 “처리”를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를 “즉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 본문은”을 “제1항은”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1의3. 프로파일링 여부

제35조제1항 중 “개인정보에”를 “개인정보 및 그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및 그 처리 정보”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인공지능”을 “프로파일링 및 인공지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u> <u>업무 성과, 경제 상황, 건강,</u> <u>취향, 관심사, 행동, 위치 또</u> <u>는 이동 등을 분석·평가하거</u> <u>나 예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u> <u>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u> <u>를 말한다.</u>
3. ~ 8. (생 략)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 5. (생 략)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u>처리</u> 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3. ~ 8.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u> ----- -----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u>

③ (생 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②

(생 략)

<신 설>

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의 법적 근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④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① ~ ③ (생략)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개인정보의 제공의 법적 근거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2
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
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
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의 법적 근거

④ · ⑤ (생 략)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

-----즉시-----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생략)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생략)

③ 제1항-----

-----.

④ 제1항은-----

-----.

-----.

1.·2. (현행과 같음)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

-----.

-----.

1.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2.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

1의2.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1의3. 프로파일링 여부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

-----개인정보 및 그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에-

-----.

② -----
-----개인정보 및 그
처리 정보-----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

-----프로파일링 및 인공지능-----
